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10. 25 선고 2023가단1060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경

변 론 종 결 2023. 9. 13.

판 결 선 고 2023.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매매대금 57,728,500원에 관하여 이루어진 2021. 7. 29.자 증여계약을 41,728,07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728,07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인은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2021. 8월경부터 그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23. 3. 14.자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미지급한 이용대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 용 내 역	사 용 금 액	수 수 료	이 자 금	연체료(연26%)
신용카드이용대금	금39,580,189원	금58,626원	금2,089,261원	
합계 금41,728,076원 (원금:39,580,189원, 수수료등:2,147,887원)				

나. 망인과 피고는 부부 사이인데, 망인과 피고는 2011. 5.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거래가액을 1억 5,100만 원으로 하여 2011. 3.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 비율로 이 사건 아파트를 공유하는 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과 피고는 2021. 7.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매매대금을 1억 7,400만 원(계약금 1,500만 원, 잔금 1억 5,900만 원)으로 정하여 E과 F에게 매매하고, 같은 해 8. 31. 자신들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당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는 주식회사 G의 채권최고액 1억 92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피담보채무는 58,543,000원이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2021. 7. 29. 위 F로부터 1,500만 원, 같은 해 8. 31. 위 E으로부터 1억 5,900만 원, 합계 1억 7,400만 원을 피고의 은행계좌(H조합,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 받았다(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마. 망인은 2021. 9. 1. 사망하였고, 피고는 2021년단5395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는데, 당시에 망인의 적극재산으로 시가 303만 원의 토지와 예금 등 금전채권 11,756,308원을, 소극재산으로 카드사용대금 채무 등 합계 176,414,589원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과 피고의 공유인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1억 7,400만 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피담보채무액 58,543,000원을 공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115,457,000원(= 1억 7,400만 원 - 58,543,000원)이고, 망인의 공유지분은 1/2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망인의 몫은 57,728,500원(= 115,457,000원 50%)이다.

피고는 2021. 8. 31. 자신의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망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망인의 몫인 57,728,5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41,728,076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은 2021. 5. 2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으로부터 3,240만 원을 차용하였고, 망인 자신과 배우자인 피고 및 자녀인 I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우체국 보험을 담보로 제공하고 보험약관대출을 받았다. 위 대출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망인은 2021. 8. 30. J로부터 1,250만 원, K으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렸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2021. 8. 31. K에게 2,500만 원, J에게 1,250만 원, 별정우체국 연금보험에 3,240만 원을 지급하여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망인이 사용한 망인과 피고 및 I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 약관대출을 변제하여, 그 채무변제로 합계 7,830만 원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앞서 본 사실을 비추어 보면, 망인은 2021. 8월경부터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으므로, 피고의 망인에 대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은 이 사건 잔금취득행위가 있었던 2021. 8. 31.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거나,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금과 그 수수료 및 이자 채권 등도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나아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① 망인과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대금이 피고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망인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매매대금을 이 사건 계좌로 수령한 후 이를 즉시 인출하여 망인의 별정우체국 연금보험 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도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자신의 몫을 피고에 대한 증여의 의사가 아니라 자신의 채무 등을 회피하기 위한 자금 은닉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④ 이 사건 매매대금은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되어 같은 날 2,000여 만 원만 남고 모두 출금되었는데, 피고가 이를 인출하여 단독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자신의 몫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시키도록 하였다는 사실과 나머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중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도록 무상 공여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망인의 몫을 피고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시킨 행위가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재원